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수탁지원사업 추진실태 —
(국회감사요구 사항)

2016. 12.

감 사 원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기준 미비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전시공간(한국관)의 임차료 및 부스설치비 등 필요한 비용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¹⁾

구 지식경제부는 2012. 2. 15.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기관별로 별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기업의 이중지원, 업체 간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비 지원을 제한(지방비를 먼저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운영 통합기준」(이하 “통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기로 결정²⁾하였다.

그리고 2013. 10. 2. 국무조정실 역시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에 지원하지 않도록 한 바 있다.³⁾

1) 2015년 기준으로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6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총 23개 기관이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 중

2) 구 지식경제부는 2012. 2. 16.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정부, 해외전시회 통합운영체계 구축”)도 배포

3)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 방향”(2013. 10. 2., 국무조정실)

또한 산업부의 “전시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⁴⁾(2013. 12. 31.)에서도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에 지원하여 특정 기업이 정부 지원을 독점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통합기준 마련 등 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통합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6. 10. 31.~11. 28.) 중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자료(총 4,449개 해외전시회, 40,024개 기업⁷⁾ 지원)를 분석하여 국비·지방비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 하노이 정보통신 박람회 등 13개 경우 산업부가 □□□주식회사 등 21개 기업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비용 중 임차료, 부스설치비, 운송비 등 국비 116백만여 원 지원하였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인천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도 위 21개 기업에 지방비 125백만여 원을 지원하는 등 [별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비·지방비 지원 내역”과 같이 3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자치단체⁸⁾가 121개 해외전시회에 참여한 708개 기업⁹⁾에 국비 2,702백만여 원, 지방비 3,199백만여 원

4)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 수행(계약금액: 5천만 원, 용역기간: 2013. 10. 16. ~ 12. 31.)

5) 산업부는 2012. 2. 15. 통합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2016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4차례 개최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한국관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만 하였을 뿐 국비와 지방비 동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아니함

6)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0월 「2016년 국제박람회 참가지침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위 지침서 제2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 관련 해외전시회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동시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7) 중복을 제외할 경우 15,925개 기업

8) 3개 중앙부처: 산업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9) 중복을 제외할 경우 528개 기업

을 동시에 지원하였다.

그 결과 다음 사례와 같이 동일한 전시회에 참가하고도 참가 기업 간 지원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참가 기업 간 지원의 형평성 상실 사례

- 2014년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한 주식회사 ■■■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전시회 참가 비용(임차료, 부스설치비, 운송비)의 50%인 3,870천 원을 지원받고 성남시로부터 나머지 3,870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반면, 위 기업과 수출실적 및 여건(직전연도 수출실적 전무) 등이 유사한 주식회사 ○○○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부담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운영 통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운영 통합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조정 업무 불철저

소 관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전시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전시회 지원사업¹⁾에 대한 통합·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산업부 고시)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조정 및 협업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을 수립한 후 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부의 “전시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²⁾(2013. 12. 31.)에서도 동일한 해외전시회에 기관별로 한국관을 각각 설치하여 참가함에 따라 일관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전달이 약화³⁾되고, 해외바이어 등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

1)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관을 설치하여 임차료 및 부스설치비 등 필요한 비용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 기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6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총 23개 기관이 각각 추진 중

2)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 수행(계약금액: 5천만 원, 용역기간: 2013. 10. 16. ~ 12. 31.)

3) 해외전시회 참가는 기업의 해외마케팅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주요 수단임

므로 위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도록 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⁴⁾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개선 방안(연구용역 내용)

- (문제) 동일 전시회 중복 참가에 따른 한국관 이미지 하락
 - 단체관 참가 중복으로 'KOREA'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약화되고 있으며, 복수 한국관의 장치 디자인 및 로고(Premium Korea, Hi Seoul 등)가 다른 경우 해외바이어 등에게 혼란을 일으킴
- (개선방안) 국가 전체적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 해외전시회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산업부, 중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도록 하여 국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협의회로 활성화시켜야 함
 - 현재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협의회를 벗어나, 각 부처 및 기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여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함

따라서 산업부¹⁾ 동일한 해외전시회에 각 기관별로 한국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을 수립한 후 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6. 10. 31.~11. 28.) 중 협의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협의회 운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째, 협의회 개최 시기 측면에서 산업부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을 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하는데도 2015년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을 2015년 6월에야 상정하는 등 협의회를 임의로 운영하고 있었다.

4) “해외전시산업 개편안 수립 연구용역”(2015년 1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전시 주최사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공식 수행기관 이외의 유관기관을 통해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양질의 부스 확보가 어려워(구석, 복도 등 외진 위치) 전시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 해외전시회 참여 시 한국관 통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음

협의회 개최 시기 부적정 사례

- (사례 1) 2015년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을 2015년 6월에야 협의회에 상정하고, 2016년도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도 2016년 2월에야 협의회에 상정
- (사례 2) 매년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년 8월에 협의회를 개최 후 2014년에는 미개최, 2015년 5월 국무조정실로부터 해외전시회 중복참가에 대한 지적이 있고 난 후에야 2015년 6월 개최
- (사례 3)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근거가 2008. 9. 30.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산업부 고시)로 마련되었으나, 산업부는 2011년 12월에서야 처음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이에 따라 [표 1]과 같이 각 기관의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이 사전에 조정되지 못하여 동일한 해외전시회에 기관별로 각각 참가하게 되었다.

[표 1] 협의·조정 지연으로 한국관 중복 설치 사례

전시회명 (전시기간)	한국관 중복 설치 현황	중복 설치 경위
스페인 바르셀로나 GSMA 모바일 전시회 (2016. 2. 22. ~ 2. 25.)	전시장 면적: 238.51㎡ 지원금액: 278,931천 원 참여업체: 23개	산업부는 2013. 2. 3.에서야 미래창조과학 부에 유사·중복 참가에 대한 조정을 요청 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시기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사유로 불응 - 이에 따라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한 국관을 각각 설치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참여업체: 22개 전시장 면적: 147.56㎡ 지원금액: 469,663천 원	

자료: 산업부

둘째, 협의회 참석 대상 측면에서 협의회 참석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없이 운영한 결과,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산업부와 동일한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 있는데도 산업부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해당 중앙부처에 협의회 참석 및 해외전시회 참가계획 제출 요청 등을 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표 2] 참석 대상 기준 미비 등으로 한국관 중복 설치 사례

전시회명 (전시기간)	한국관 중복 설치 현황		중복 설치 경위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2015. 6. 2. ~ 6. 5.)	기관명: 산업부	전시장 면적: 288㎡	■ 2015년 해외전시회 관련, 산업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협의회 참석 요청을 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중복 참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한국관을 각각 설치
	참여업체: 31개	지원금액: 102,036천 원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전시장 면적: 54㎡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2015. 10. 13. ~ 10. 16.)	참여업체: 6개	지원금액: 67,002천 원	
	기관명: 산업부	전시장 면적: 297㎡	
	참여업체: 33개	지원금액: 141,297천 원	
UAE 두바이 정보통신 전시회 (2015. 10. 18. ~ 10. 22.)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전시장 면적: 108㎡	
	참여업체: 12개	지원금액: 150,042천 원	
	기관명: 산업부	전시장 면적: 279㎡	
	참여업체: 29개	지원금액: 79,332천 원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전시장 면적: 55.2㎡	
	참여업체: 6개	지원금액: 69,225천 원	

자료: 산업부

셋째,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의 적정성 측면에서 산업부는 각 기관의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채 [표 3]과 같이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하는 문제도 있었다.

[표 3] 조정안 부실로 한국관 중복 설치 사례

전시회명 (전시기간)	한국관 중복 설치 현황		중복 설치 경위
싱가포르 국제 식품 및 호텔박람회 (2016. 4. 12. ~ 4. 15.)	기관명: 중소기업청	전시장 면적: 90㎡	■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하였으나,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한 후 그대로 확정 -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관을 각각 설치
	참여업체: 10개	지원금액: 45,218천 원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전시장 면적: 274.5㎡	
국제 상해 유아용품전 (2016. 10. 19. ~ 10. 21.)	참여업체: 33개	지원금액: 227,623천 원	
	기관명: 중소기업청	전시장 면적: 99㎡	
	참여업체: 10개	지원금액: 33,205천 원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전시장 면적: 162㎡	
	참여업체: 18개	지원금액: 70,628천 원	

자료: 산업부

넷째, 협의·조정 의 적정성 측면에서 [표 4]와 같이 산업부는 일부 중앙부처가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재요구하거나 민·관

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⁵⁾ 등에 보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협의·조정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표 4] 형식적인 협의·조정으로 한국관 중복 설치 사례

전시회명 (전시기간)	한국관 중복 설치 현황		중복 설치 경위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2016. 5. 31. ~ 6. 3.)	기관명: 산업부	전시장 면적: 279㎡	■ 2016년 해외전시회 관련, 산업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해외전시회 참가계획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미제출 - 그런데 산업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나머지 기관의 해외전시회 참가 계획만 취합하여 “유사·중복 사업 조정안” 마련 - 이에 따라 2개 해외전시회에서 산업부 등 3개 기관이 한국관을 각각 설치
	참여업체: 29개	지원금액: 151,410천 원	
독일 소비재 가전 전시회 (2016. 9. 2. ~ 9. 7.)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전시장 면적: 20㎡	
	참여업체: 2개	지원금액: 14,349천 원	
	기관명: 중소기업청	전시장 면적: 247㎡	
	참여업체: 21개	지원금액: 67,862천 원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전시장 면적: 99㎡	
	참여업체: 11개	지원금액: 78,781천 원	

자료: 산업부

그 결과 [표 1]부터 [표 4]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3년간(2014~2016년) 8개 해외전시회에 4개 중앙부처가 각각 참가하는 등 유사·중복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 제대로 조정,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통합된 국가브랜드 이미지 전달 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해외전시회 중복참가를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앞으로 해외전시회에 여러 기관이 한국관을 각각 설치하여 참가하는 일이 없도록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른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산업부(장관 주재), 중앙부처 차관 및 수출 유관기관장 등이 수출동력 발굴 및 수출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